

의안번호 제120호

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이태모 의원 외 5명
제출연월일	2022. 9. 14.

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120호

발의연월일 : 2022. 9. 14.

대표발의자 : 이태모

공동발의자 : 민병춘, 장진호,

이상구, 김종욱,

윤금숙

1. 제안이유

가. 홀로 사는 노인의 사후(死後)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또한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논산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,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추진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라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안 제5~6조)
- 마. 협력체계(안 제7조)
- 바.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제16조, 제28조, 「노인복지법」제4조, 제27조의 2

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입법예고 : 2022. 9. 14. ~ 9. 18.(5일간)

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한 불암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,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노인"이란 「지방자치법」제16조에 따른 논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
- 2. "홀로 사는 노인"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.
- 3. "고독사" 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- 4. "고독사 위험자"란 경제적,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.
- 5. "홀로사는 노인 생활지원사" 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, 안부 전화,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논산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추진계획 수립) 시장은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현황조사 및 등록 ·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- 2.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및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

- 4.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- 5.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지원대상) ① 시장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 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
 - ③ 시장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 자로 선정한다.
- **제6조(지원내용)**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
 - 2. 긴급의료비 및 돌봄
 - 3.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
 - 4.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
 - 5.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 장례서비스
 - 6.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제7조(협력체계)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, 응급의료기관,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・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,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8조(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)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	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이태모 의원 외 5명	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- 제16조(주민의 자격)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이 된다.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노인복지법」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 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다.

□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 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고독사" 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- 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 -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(이하 "고독사위험자"라 한다)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 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 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

- 제6조(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 - 3.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 - 4.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5. 청년층 · 중년층 ·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
 - 6.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
 - 7.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
 - 8.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 · 연구
 - 9.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
 - 10.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·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
 - 11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국회에 대한 보고)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 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.

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

제10조(고독사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

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그 밖의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「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」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(이하 "형사사법정보"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(이하 "제공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 -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(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·연구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에서 같다)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·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이하 "정보보호조치"라 한다)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(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·연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

- 통계를 수집·분석 및 관리하고,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3조(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위험 자의 조기 발견,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고독사 예방 협의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다.
- 제15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한다.
- 제16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·교육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·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 - 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
- 3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고, 상담·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·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상담·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17조(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,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·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전문인력의 양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 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·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9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장 벌칙

- 제21조(벌칙)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